설비 이설 계 약 서



삼성전자주식회사(이하 "갑"이라 칭함)와 주식회사아토(이하 "을"이라 칭함)은 다음과 같이설비이설 계약(이하 "본 계약이라 칭함)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

제 1 조 [목적]

본 계약은, 갑이 보유한 본 계약 제2조의 대상설비에 대하여 갑이 이설을 요청할 경우 을이 최선을 다하여 실시 함으로써 생산효율 극대화에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[계약대상설비]

갑이 소유하고 있는 10라인 CVD 공정의 Canon APT6000 설비로 한다.

제 3 조 [계약기간]

- 3-1.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6년 02월 01일부터 2006년 05월 30 일 까지로 한다.
- 3-2. 계약기간 만료시,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연장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- 3-3. 본 계약 체결 이전 발생한 이설비용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.

제 4 조 [계약 금액]

4-1. 작업범위: 이설작업전 사전검수, 설비해체, 이설, Set-Up 및 사후검수까지로 한다. 단, 라인간 이설시 운반작업은 갑이 진행하며, 비닐포장비는 을이 부담한다.

4-2. 작업주체 : 이설작업은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며, 갑은 이에 최대한 협조한다.

4-3. 이설비용

- Canon APT6000 Set Up
- Canon APT6000 (해체+랩 포장)

り、900、000/14 #5,000,000/印

: ₩1,900,000/대

제 5 조 [기술서비스의 제공]

5-1. 작업자의 자격

1) 갑의 작업현장으로 파견하는 을의 작업자는 교육 및 연수기간을 포함한 실무경력이 신입사원은 2년, 경력사원은 1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자격이 미달되는 작업자는 설비 이설작업 인원에서 제외한다. 단, 갑과 사전에 협의된 인원에 대해서는 이설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1



2)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을은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는 작업자의 이력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
5-2. 대응시간

을은 갑이 요구하는 일정 기간내에 설비가 이설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토록 하며, 갑은 을의 원활한 이설작업의 수행을 위해 최소한 1주 이전에 이설계획을 을에게 통보한다

5-3. 보증사양

- 1) 을은 갑이 사전검수에서 점검한 장비 상태를 충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갑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
- 2) 작업종료의 기준은 설비 이설전 합의사양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

5-4. 작업보고서의 제출

을의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작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담당자로부터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이때 작업보고서에는 작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그리고 준비작업시간, 작업자명, 담당자명을 구분하여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작업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

5-5. 하자보증

작업완료후 이설전 합의사양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, 을은 갑과 합의하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

제 6 조 [대금청구 및 지급]

6-1. 갑의 대금지급 규정에 준하여 작업검수 완료 후 대금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

[계약체결 이전 완료된 내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내역을 소급 적용한다]

- 6-2. 을은 대금청구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 - 1) 대금청구서
 - 2) 작업보고서
 - 3) 거래명세표 (필요시)
 - 4) 세금계산서
 - 5) 기타 갑이 요청하는 서류

제 7 조 [의무 및 책임]

- 7-1. 을은 기술서비스를 제공 중 갑의 의문사항에 대해 최선의 답변 및 문제해결을 하여야 한다
- 7-2. 을의 실수로 장비 및 부품을 파손시키거나 설비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을의 책임하에 원상복구를 실시하여야 한다
- 7-3. 갑은 을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고장 현상을 자세히 전달해야 하며, 그 내용이 대외비일 경우는 감의 보안규정에 준한다
- 7-4.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, 갑의 기술 서비스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



- 1) 전쟁,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
- 2)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, 정부의 지시에 의하는 경우



제 8 조 [보안책임]

을은 갑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진다



제 9 조 [안전책임]

- 9-1. 을은 갑의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
- 9-2. 설비를 수리중에 을의 안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적/물적 책임은 을이 진다

제 10 조 [계약의 해지]

- 10-1 갑 또는 을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
 - 1.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
 - 2.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면허, 영업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
 - 3. 파산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거나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
 - 4. 가압류·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
- 10-2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,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

제 11 조 [계약의 양도]

쌍방간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 권한 및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

제 12 조 [분쟁 및 조정]

- 12-1.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
- 12-2.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에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해결한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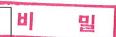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"갑"과 "을"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6년 01월 일

※ 첨부: 10라인 설비이설 견적서 1매

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윤 종 용 (왕) 경기도 시흥 정왕동 1264-1 2다 302 아 토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문 상 영 (엔)

O ATTO.Co., Ltd 見 積書



Quotation No: #설비-06-1Q-R001. Rev:0.01

견적명: CANON APT-6000 설비 이설Date: 2006 년 1월 10일수 신: 삼성전자 주식회사 귀하C.C: 구매부 이선준 과장님귀하

금 액: 일금 천칠백육십만원정(V.A.T別途)

₩17,600,000

등 록 번 호	133 - 81 - 27249
상 호	주식회사 아토
대 표 자	문 상 영
사 업 장	경기도 시흥 정왕동 1263-1 2다 302
업 태	제조 종목 : 반도체 장비
TEL / FAX	(031)496-7484 / (031)499-8375

0	품 명	수량	단위	단 가	금 액	비고	
		11L Cano	n APT-60	00 설비 해체 및 이설			
SI	/AT#31	1	set				
11gg	SET UP	1	ea	₩6,900,000	₩6,900,000	이설Set up	
10	해체	1	ea	₩1,900,000	₩1,900,000	해체	
2 SV	/AT#35	1	set				
	SET UP	1	ea	₩6,900,000	₩6,900,000	이설Set up	
	해체	1	ea	₩1,900,000	₩1,900,000	해체	
	합 계				₩17,600,000		
	** 이 하 여 백 ***						
		단, 위 견적 금액에서 아래의 비용은 제외 됨. 1.설비 이동(도비) 비용. 2.Cable Tray 비용. 2.유틸리티 비용. 3.설비 Refurbish (Parts) 비용. 4.하자 보증(Warranty) 비용.					
	Total Price				₩17,600,000		
		E-Mail: irusang@attoware.co.kr		*** 부가세 별도 ***			
담당자 연락처 및 E-Mail		Mobile: 011-9961-8798					
아토 장비 사업부 영업팀 조일상		Tel: 031-237-9766					
		Fax: 031-237-5766					

001071136889339